

보도자료

2011년 3월 30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나. 신규방송사업정책TF 김영관과장(2470)

[보고안건]

가. 인터넷정책과 홍진배과장(2730) 나. 뉴미디어정책과 손승현과장(2450)

2011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10.12.31)된 (주)CSTV, (주)연합뉴스TV, (주)jTBC에 대해 승인하기로 의결함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에 관한 건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10.12.31)된 (가칭) (주)채널A, (주)매일방송에 대해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11.6.30일 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특정 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에서만 동작되는 ActiveX의 광범위한 사용과 구버전 웹 브라우저 사용률이 높아 웹 호환성 및 보안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 ActiveX 대체기술 적용 확산, 웹 브라우저 이용 다양화 및 웹환경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지상파DMB 정책방안(안)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 세계 최초로 상용화('05.12월)하고 이동방송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지상파DMB는 이용자의 적은 경제 부담으로도 재난방송 등 시청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취약한 수익구조와 모바일에 맞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에 따라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승인 관련사항

1. 전체회의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주)씨에스티브이, (주)제이티비씨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다음의 승인조건을 부과한다.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주)연합뉴스TV에 대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다음의 승인조건을 부과한다.

1. ~ 7., 9. (상 동)

8.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 (가칭)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 경과사항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공고('10.11.10)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접수('10.11.30~'10.12.1)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운영('10.12.23~12.31)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의결('10.12.31)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승인 신청 접수順)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 (가칭) (주)연합뉴스TV
- (주)씨에스티브이('11.3.18), (주)연합뉴스TV('11.3.18), (주)제이티비씨('11.3.22), 승인장 교부 신청 접수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보고('10.3.23)
- (가칭) (주)채널에이('11.3.28), (주)매일방송('11.3.28)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신청 접수

3. 승인장 교부 관련 검토 결과

가. 신청법인 현황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2개 법인,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1개 법인의 승인장 교부 신청 접수

구 분	신청법인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자본금	최대주주
종합편성	(주)씨에스티브이	오지철	장윤택	3,100억원	조선일보사
	(주)제이티비씨	남선현	김영신	4,220억원	중앙미디어네트웍
보도전문	(주)연합뉴스TV	박정찬	이기창	605억원	연합뉴스

나. 승인장 교부 관련 검토 사항

-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 주요주주 변경 여부 및 기타주주 변경에 따른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승인조건 부과 내용

【심사위원회 정책 건의사항】

- 금번 사업자 선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인 점을 고려하여 첫 승인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각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서「기본계획」의결시 마련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을 부과할 필요
- ※ “언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가 다른 종편·보도PP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의 뉴스 공급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다. 검토 의견

- **(개요)** 심사위원회 법률 분야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에서 검토(‘11. 3. 18 ~ 3. 28)한 결과,
 - 3개 신청법인 모두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였고, 자격 여부 등에 문제가 없으므로 승인하도록 하되, 승인장 교부시 승인조건을 부과
- **(자격 여부)** 3개 승인장 교부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를 검증한 결과,
 - 주요주주의 구성(지분을 포함)이 변경된 신청법인은 없음
 - 기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및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신청법인은 없음
 - 방송법 제13조(결격사유)에 위반되는 신청법인은 없음
- **(승인조건)**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및 기존 방송사업 허가·승인 사례를 고려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인 (주)씨에스티 브이 및 (주)제이티비씨에 대해 <1.의결사항 가.>와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승인장 교부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인 (주)연합뉴스TV의 경우에도 종편 채널과 동일하게 부과하되, 보도 채널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관련사항(제8호)은 제외하고,
-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승인조건을 <1.의결사항 나.>와 같이 부과하고 승인장을 교부

○ (승인 유효기간) 심사위원회의 의견 및 최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적 기준기간(방송법 시행령)인 5년보다 2년 단축한 3년으로 설정

※ <방송법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4.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관련 검토 결과

가. 연장 요청 신청법인 현황

○ (가칭) (주)채널에이 및 (주)매일방송에서 신청기한 연장 요청

구 분	신청법인명	대표자	편성책임자	자본금	최대주주
종합편성	(가칭) (주) 채널에이	안국정	박희설	4,076억원	동아일보사
	(주) 매일방송	윤승진	장태연	3,950억원	매일경제신문사

나. 검토의견

○ 자본금 납입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및 기존 사례를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10. 12. 31,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따라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11. 6. 30일까지 연장

5. 향후일정

○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및 신청기한 연장 통보

지상파DMB 정책방안

(1) 현 황

□ 일반 현황

- (방송권역·사업자) 8개 권역 (수도권, 지역 단일 권역, 지역 6개 권역), 19개 사업자 (수도권 6개, 지역 13개)

※ 수도권은 지상파계열 3사 및 신규 법인 3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은 모두 지상파계열 사업자로 구성

- (방송채널) 비디오 13·오디오 7·데이터 7개(수도권), 비디오 5·오디오 2·데이터 4개(지역 각 권역)

□ 경영 및 투자실적 (수도권 6개 사업자 기준)

- (경영) '06 ~ '10년까지 총 매출액 1,249억원, 누적적자 832억원 기록

[매출액 및 손익 (단위 : 억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누 적
매출액	53억원	204억원	350억원	279억원	363억원	1,249억원
영업손익	-431억원	-263억원	-88억원	-54억원	4억원	-832억원

- (투자) 시설구축, 콘텐츠 제작·구매 등에 총 1,051억원 투자

□ 단말기 보급 현황

- '05 ~ '10년까지 누적판매 대수 총 4,200만대를 기록

※ '10년 말 현재 지상파DMB 단말기 실제 보유자는 3,000만명으로 추정

□ 지상파DMB 산업구조

- (단말기) 휴대폰(68%) 및 차량용 내비게이션(24%) 위주로, 단말기 제조·판매를 단말제조사와 유통업체(이통사 등)에 의존

- (콘텐츠) 지상파계열 사업자는 주로 지상파방송을 그대로 재전송하나, 신규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구매에 따른 별도 비용 부담
- (수익구조) KOBACO가 지상파방송 광고를 독점 판매함에 따라, 주 수익원인 광고매출을 KOBACO에 의존

(2) 문제점

□ 수익구조 측면 : 광고매출 부진

- 지상파DMB는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무료방송이나, 광고 매체로서 경쟁력이 부족(작은 화면, 이동 중 시청)하여 적정 수입 확보 곤란

※ 수도권 사업자 당 월 평균 광고수입(2억원 수준)은 월 평균 운용비용(5억원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지역 사업자는 광고수입이 전무한 실정

□ 법·제도 측면 : 매체 특성과 법·제도의 부정합

- 지상파DMB는 방송법 상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 모바일방송 특성에 맞지 않게 기존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
- 지상파DMB 사업구도 또한 시장규모에 비해 사업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사업권역이 세분되어 있음

□ 서비스 측면 : 수신환경 불량

- 수익부진·사업자 의지부족 등의 사유로 네트워크 투자가 부진하여, 난시청·음영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DMB 이용자의 편익이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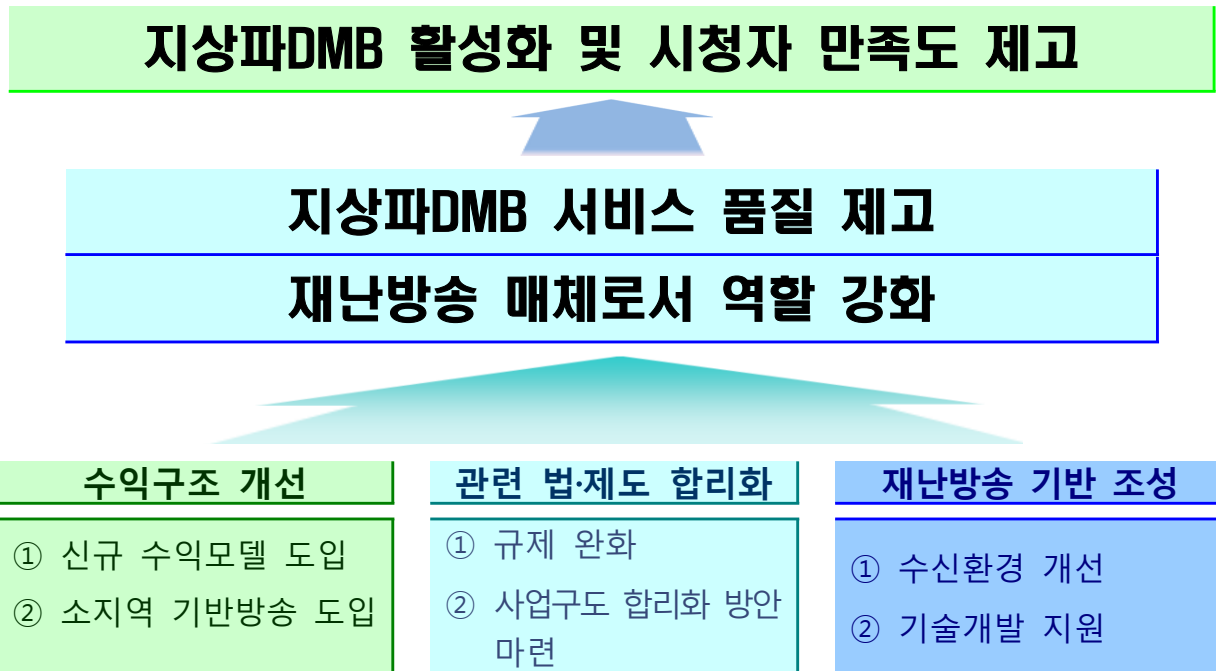
[지상파DMB 커버리지 현황 ('10년 기준)]

전국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제주권
81%	97%	86%	64%	78%	70%	90%	78%

- 이러한 낮은 서비스 품질은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상파DMB 산업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

[3] 지상파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 수익구조 개선

- (신규 수익모델 도입) 뉴미디어로서의 지상파DMB 매체 속성, 광고 수입 구조의 한계,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수익모델 검토

※ 도입시기, 구체적 과금방식 등은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별도로 위원회 보고

< 고려 가능한 과금방식 >

- (이용자 인증방식) 지상파DMB 서비스 이용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고 인증을 통해 DMB 서비스 이용하는 방식
- (단말기 기반 과금방식) 지상파DMB 단말기 가격에 미리 일정액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방식
- (채널 유료화 방식) 기존 DMB 채널은 무료를 유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추가되는 채널에 대해 유료화 하는 방식

- (소지역 기반방송 도입) 지상파DMB 이용자가 위치한 특정 지역의 특화된 정보·광고 등의 제공을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지역 기반방송을 도입 (방송법 상 근거 마련,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관련 법·제도 합리화

- (규제 개선) 겸영규제를 완화하여 지상파DMB 사업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DMB 시청행태를 고려하여 **중간광고 관련 규제**를 개선
 - 또한, DMB 매체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사업운영 상의 비용부담 등을 감안, 외주제작물 등에 대한 **편성규제**를 완화
- (사업구도 합리화) 지상파DMB 사업의 내·외부 환경 변화와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DMB 사업자의 **법적 지위 재설정**, **사업 권역 조정** 등의 사업구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

□ 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재난방송 기반 조성

- (수신환경 개선) 중계망 확대구축에 관한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실적 부진 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경우 재원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 **중계망 구축비용 일부**를 예산지원
 - ※ 터널 및 지하구간 시설관리 주체에게 원활한 재난방송을 위해 DMB 중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10.5월 발의) 국회 계류 중
 - 또한, DMB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효과적으로 중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DMB 커버리지 측정 방법을 개선
- (기술개발 지원) 단말기가 자동으로 재난방송 신호를 인지·통보하는 ‘**자동인지 DMB 재난방송**’, 통신망 연동을 통해 끊김 없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모바일 하이브리드 DMB**’
 - 고화질·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DMB(AT-DMB)**’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세부 과제로 ’11년 40억원 지원 계획이며, 이후 계속 과제로 ’13년까지 지원

3) 추진계획

추진 과제	추진 일정
○ 신규 수익모델 도입	
- 관련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 '11. 7월
- 신규 수익모델 도입 방안 마련 및 위원회 보고	'11. 8월 중
○ 소지역 기반방송 도입	
- 방송법 상 근거 마련	'13년 중
- 관련 기술개발 지원	~ '13년
○ 규제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11년 중
○ 사업구도 합리화	
- 연구과제 수행	'11 ~ '12년
- 방송법 등 관련 제도 개선	'13년 중
○ 수신환경 개선	
-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계속 과제
- 중계망 구축비용 지원	관련 법률 개정 시
- DMB 커버리지 측정방법 개선	'11년 중
○ 기술개발 지원	~ '13년